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회)	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
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도형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 중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,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한 「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」(2024. 10. 22. 제20529호 공포, 2025. 4. 23. 시행)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수중레저 교육사업의 적용범위에 교육장소와 관련된 근거조문 포함
(안 제6조제2항 개정)
- 나.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를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6조제3항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실시 예정

3) 행정규제 : 심사비대상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전단 중 “법 제11조제1항제5호”를 “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”란 수중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.

1.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중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
2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중레저기구
3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장
4. 실내에 설치된 교육장소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사업자의 조치 등) ① (생략)	제6조(사업자의 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제8호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(이하 “수중레저교육자”라 한다) 1명 이상을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.	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 설>	③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”란 수중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.
	1.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중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

	<u>2.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중 레저기구</u> <u>3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사업장</u> <u>4. 실내에 설치된 교육장소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	
연 락 처	(044) 200 - 6265